

유럽연합(EU)의 동물복지 정책 및 주요 법령 개괄¹⁾

- 농림부 가축위생과 김용상 DVM, Ph.D

I. 서론

최근 전세계적으로 수의업계 및 축산업계에 있어 특히, 가축의 사육, 수송 및 도살·처리에 있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중 하나는 동물복지(Animal Welfare)에 관한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이 있어 제3조(동물의 보호)에서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적정한 사육·관리)에서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동물학대등의 금지)에서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 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동물보호법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없는 법령으로서 구체적인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언적 성격이 강한 법이다. 최근 농림부에서 동 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인 점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된다.

1) 본 발표내용은 본인이 1997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유럽집행위원회 농업총국 수의정책 법률과에서의 EU 수의정책연수과정에서 파악한 내용과 금년 초 주EU 한국대표부 농무관이 농림부에 EU 동물복지정책에 관하여 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동물복지분야는 가축질병분야, 수의공중위생분야와 함께 3대 수의분야로서 앞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당수준에 올라가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이제야 일부에서 해외자료 등을 통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준비 또는 실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시점이나 머지 않아 관련업계, 특히 수의사들의 중요한 분야로 대두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수의사로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본연의 위치를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본인은 우리가 널리 알고 있듯이 동물복지 측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구미제국의 동물복지정책을 살펴보고자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동물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EU 규정을 파악하여 이를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논의되는 사항은 애완동물이나 실험동물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산업동물로서의 가축에 대한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장에서의 사육 시, 도축목적으로 동물을 수송할 경우, 그리고 동물의 도축 시 동물복지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EU 동물복지정책

동물복지분야에서의 EU 활동은 “동물은 의식이 있는 존재(sentient being)”라는 인식을 전제로 출발한다. 일반적 목적은 동물이 피할 수 있는 고통이나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동물의 소유자/사육자가 최소한의 복지조건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EU는 민간의 동물보호운동 차원을 넘어 공공 정책으로 동물복지정책을 도입, 확대해 가는 추세이다. 동물(가축)의 사육, 이동, 도축 등 축산물의 생산과정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고려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실정법에 근거를 둔 시책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바, 이런 EU의 동물복지정책은 향후 유럽의 식품, 농업, 환경정책은 물론, WTO 등 국제규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EU 회원국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일반국민 및 관련단체 등에서 급증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Commission의 규정제정 등 업무도 크게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EU에서 동물의 보호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중 하나이며, 동물복지를 위한 Eurogroup 등 동물복지 단체들뿐만 아니라 유럽의회에서도 주도적으로 공동체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조치들을 채택하여야 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Commission도 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업무를 최우선 처리업무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 배경 및 제도화 과정

가. 제도화 목적 및 명분

기본적으로 동물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므로 이에 합당한 대우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야기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동물복지에 대한 제도화의 토대이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가능한 양호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사육, 수송, 도축 등에 있어 동물의 건강, 복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축산)식품을 생산하는 방법은 국민건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중보건 측면 또는 여타의 측면에서 어떠한 합리적 제한이 있어야 하며, 최근 소비자들은 식품으로서 축산물의 생산과정, 즉 복지의 사육, 수송, 도축 등의 과정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중에 그간 EU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동물복지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동물의 소유자 또는 사육자 등은 가능한 범위에서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여 동물들을 사육, 수송, 도축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적인 규제조치도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다.

나. 제도화 과정 및 주요법령

1960년대 중반에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공식적 정책화가 논의되기 시작하여 1968년에는 동물복지에 대한 협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EU는 수송중의 동물보호규정을 골자로 하는 EU지침 77/489/EC(현, 91/628/EC 및 95/29/EC)을 입법하여 동물복지에 관한 첫 법령을 제정하였다.

그후 1986년에 산란계의 과도한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EU지침 86/113/EC(현재 88/166/EEC으로 대체)가 제정되었고, 91년도에 EU지침 91/629/EEC에 의하여 송아지(calves) 사육기준이, EU지침 91/630/EEC에 의하여 돼지사육기준이 제정되었다.

현재 EU에 있어 동물복지 문제는 현재 동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동물에 대한 가혹행위를 방지하는데 초점이 주어지고 있으며, 이에 의거 1997년 EU 이사회에서는 동물보호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다음 5가지 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EU 지침 98/58/EEC가 제정되어 모든 종류의 동물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규정이 규정되었다.

- ① 굶주림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 물과 먹이공급
- ② 불편(discomfort)으로부터의 자유 : 적절한 사육환경
- ③ 고통,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 부상방지 및 신속한 도축
- ④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 적절한 공간 및 시설
- ⑤ 공포와 고민으로부터 자유 : 심적 고통방지

1999. 5. 1 암스테르담 조약(Treaty of Amsterdam)에서 EU는 동물이 감정이 있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의정서'(protocol on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를 합의하여 모든 관련 EU 정책에 있어 동물 복지가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동 protocol에는 EU 각 기관 및 회원국은 농업, 운송, 역내시장 등 EU정책, 법령 등을 수립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동물복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우, 투견등 각 국가의 행사, 경기 등에서의 동물의 가혹행위 방지 문제는 각국 고유권한 사항이며 EU의 법령제정 권한이 아니라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산업동물로서의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령으로는 아래와 같다. 참고로 EU 동물복지규정 목록을 별첨에 덧붙여 놓았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분은 인터넷 (http://www.europa.eu.int/eur-lex/en/lif/reg/en_register_035030.html)을 통해 규정 원문을 얻을 수 있다.

- EU지침 88/166/EEC : 산란계 사육규정
- EU지침 91/629/EEC : 송아지 사육규정
- EU지침 91/630/EEC : 돼지 사육규정
- EU지침 91/628/EC 및 95/29/EC :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수송 규정
- EU지침 93/119/EEC : 도축장에서의 동물복지 규정
- EU지침 98/58/EEC : 농장에서의 일반적 가축 사육규정

기본적으로 동물복지에 관한 EU 규정의 제정사유는 첫째는 동물보호분야에서 각 회원국 법규들간의 불일치가 EU 일반시장의 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고, 둘째는 EU 공동체가 일반적으로 동물에 대한 모든 형태의 잔혹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물복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EU 집행위원회내의 수의과학위원회가 작성하고 집행위원회의 법률제정절차에 따라 후속작업을 한 뒤 집행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게 된다. 집행

위원회는 동물복지분야에 있어 어느 회원국이 관련 EU 규정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사안에 대하여 간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동 사안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EU Treaty의 Article 169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적 절차를 개시하여 유럽법원 (Court of Justice)의 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현재까지 EU 회원국들이 농업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어 공동체 차원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공통농업정책(CAP)²⁾"의 수립시 동물복지부분을 고려해 왔고 동물의 수송 및 도축중 농장동물의 보호에 관하여 1974년이래 공동체 규정들을 시행해 오고 있다.

참고로 EU는 최근 축산물의 국제적인 무역이 동물복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WTO 농업협상에서 NTC(Non-Trade Concerns : 비교역적 기능)의 한 부분으로 이론화하고 있으며, '00.6에는 '동물복지와 농업무역 (animal welfare and trade in agriculture)'이란 제하의 별도 협상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2. 주요법령 내용

가. 농장에서의 동물복지 규정(EU지침 98/58/EEC)

-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육목적의 동물이며, 야생동물, 시합, 스포츠, 문화행사 등에 사용되는 동물, 실험용 동물, 무척추 동물 등은 제외됨.
- 모든 회원국은 동물의 소유자 및 사육자들이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 괴롭힘, 부상이 없도록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동물은 가축 사육의 전문적 기술과 적절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함.
- 동물들이 불필요한 고통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동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육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2) 공통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 CAP)란 EU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공동체의 모든 세부적인 농업정책 및 지침들은 이에 부합되게 설정되어야 하며, 각 회원국도 자국의 농업정책을 CAP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EU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농업을 이끌어나가 가장 선진적인 농업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1962년 처음 확립되었고 농업생산 증대, 농민 생활수준 보장, 시장표준화, 원활한 공급보증 및 합리적인 가격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것임.

- 사육시설에 있어, 동물들이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뾰족한 모서리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청결과 멸균 등 위생적이어야 함.
- 동물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계되는 자동화 시설들은 매일 점검되어야 하며, 고장시 즉시 수리되어야 함.
- 동물들에게 그 품종과 연령에 따라 적절한 물과 먹이를 주어야 하며, 불필요하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사료를 급여하여서는 안됨.

나. 도축장에서의 동물복지 규정(EU지침 93/119/EEC) 주요내용

- 동물들이 도축장에서 가능한 고통, 긴장, 흥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이동, 계류, 대기, 기절, 도살 등이 관리되어야 함.
- 도축장의 시설, 장비 등은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도축장 종업원은 도축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어야 함.
- 가축은 반드시 기절시킨 이후 죽여야 하며, 기절 및 도축의 방법, 장비, 시설 등은 동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함. 또한 기절 또는 도살 전에 동물의 발을 묶거나, 거꾸로 매달아서는 안됨. 다만, 종교적 행사 등의 필요에 의하여 기절시키지 않은 상태로 죽일 수 있음.
- 식용 육류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가된 도축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 부상한 동물, 질병이 있는 가축은 도축장으로 수송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살하여야 함. 다만, 추가적인 고통이 없이 도축장으로 수송할 수 있는 경우는 소관 기관의 승인아래 수송할 수 있음.

다. 동물의 수송중의 동물복지 규정(EU지침 91/628/EC 및 95/29/EC)

- 회원국내 또는 회원국간의 동물의 수송에 있어서 적절한 동물보호조치가 수립되어야 함.
- 회원국은 수송되는 모든 동물의 소유자, 목적지 등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함.
- 동물수송을 하는 사람은 동물수송에 필요한 적절한 지식과 방법을 알아야 하며, 24시간 이상의 수송기간이 소요될 경우 수송과정에서 적절한 물과 먹이의 공급, 적절한 휴식 등을 위한 계획이 확보되어야 함.
- 회원국들은 동물의 수송과정이 지연되어 동물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항만, 공항, 철도, 국경조사 등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수송과정의 관할 소관기관은 동물수송과정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동물수송의 중단 등 특별조치를 취하여야 함.

3. 동물복지와 농업무역(2000. 6 농업위원회에 제출한 EU제안서 주요내용)

- 소비자와 생산자들 사이에 사육기술이 동물, 동물의 건강과 복지,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특히, 소비자들은 동물이 어떻게 사육되느냐가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동물들이 어떻게 사육, 수송, 도축되는지 알고 싶어함.
 - 이런 요구를 받는 생산자들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를 원함.
 - EU는 점진적으로 사육, 수송, 도축 및 실험 문제를 다루는 동물보호에 대한 입법도치를 도입해 왔음.

- 동물복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무역으로 인해 저해되지 않도록 보장
 - 식품을 생산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EU의 믿음이며, EU는 많은 경우 Council of Europe같은 국제협약에 기초하여 그와 같은 제한을 입법화했음.
 - 그러나 소비자, 생산자, 복지단체 사이에서 WTO가 기본목표인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틀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동물복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틀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음.
 - 그런 틀이 없는 상태에서는 국내적인 복지기준을 지켜서 생산된 식품이 보다 낮은 기준에 맞춰 생산된 수입품에 의해 대체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 나라마다 동물과 사육방법에 대해서 서로 다른 문화적, 윤리적 태도를 갖고 있음. 높은 동물 복지기준이 각국 농업의 상대적인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름.
 - 결과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적용되는 동물복지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여러 가지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
 - 소비자들은 수입품이 어떤 기준에 맞춰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일관된 정보를 갖지 못할 수 있으며, 국내 생산자가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이것이 EU가 동물복지문제를 WTO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믿는 진짜 이유임. WTO의 다른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복지 관련 조치와 농축산물 교역의 관계를 감안할 때, 이 문제는 농업협정 20조에 의거 논의해야 한다고 봄.

- 동물복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새로운 무역장벽을 쌓기 위한 기초를 만들려는 것이 아님.
 - EU는 수입품에 대해 국내 복지기준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있음.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기준을 진흥하고,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임.
 - EU의 일부 경쟁국에서는 EU가 WTO회원국들이 자국이 복지기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조항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런 접근을 하면, 세계는 자국의 주요 수출시장의 기준에 맞춘 수출국과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기준을 강화한 나라로 양분될 것임. 그것은 동물복지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EU가 의도하는 바가 아님.
 - 무역자유화의 과정이 EU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지해주는 것임.

- 동물복지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중요성은 WTO 회원국간에 명백히 차이가 있음 그러나, 동물복지 문제가 떠오르는 통상관련 이슈임은 최근 선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협약,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작업 등을 통해 인식되어 오고 있음.
 - EU는 이 문제의 복잡성과, 각 WTO 회원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게 조정된 동물복지 조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 그러나 무역자유화가 동물 복지 특히 사육중인 동물과 산 동물의 수송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음.
 - WTO 회원국들은 동물 복지를 이유로 농산물이나 식품의 교역을 방해해서는 안 됨.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동물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복지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 현행 WTO협정(SPS협정, TBT협정, GATT 20조, 농업협정 20조)은 이미 동물복지 관련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 EU는 동물복지 문제가 WTO 내에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중요한 NTC로 제기함. 동물복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결과로는 몇 가지 조치의 조합이 나올 수 있음.
 - 동물복지 문제를 다루는 다자간 협정의 개발 : WTO 규범과 다자간 동물복지 협정에 따른 무역조치간의 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화 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음.
 - TBT협정 2조 2항에 다른 적절한 표시(의무적 또는 자발적) : 소비자들이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간에 어떤 동물복지기준을 준수하면서 생산된 것인지 등을 포함하여 식료품에 대해 알고 선택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음

4. 향후전망 및 평가

가. 각계 동향

EU 15개 회원국중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정도를 보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등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관심이 적어 통일된 EU 공동체 규정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동물복지가 강조되는 쪽으로 계속 법률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최근 2001년 영국 구제역 발생으로 유럽내 500만두 이상의 돼지가 구제역 예방 및 박멸 차원에서 도축, 폐기됨에 따라 동물복지 문제가 부각되었으며, "밀집사육형 축산(intensive farming 또는 factory farming)"이 결국 질병과 관계되고 식품의 안전성과도 연결된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EU 집행위에서는 '99년 암스테르담 협약이후 다양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 보호 및 보건총국(DG X X IV)³⁾"에서 동물복지가 동물건강 및 식품안전에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EU집행위 "농업총국(DGVI)⁴⁾"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WTO에서 논의하여야 하며, 동물복지를 위한 정부지원은 WTO 농업협상 허용보조금으로 주장하는 한편, 기존 EU공동 농업정책(CAP)에 의한 여러 보조금의 지급 조건을 동물복지와 연계시키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 최대 농민단체인 COPA/COJECA는 2002.2 장기농정전략보고서를 통하여 "동물복지" 문제는 아직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규정이므로 EU 역내 농민들에게만 강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동물복지 규정은 준수함에 따르는 추가 비용은 정부에서 적절히 보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 EU 집행위원회의 집행부서중 하나로 대체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유사함.

4) EU 집행위원회의 부서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농림부에 해당하며, 동 조직중 Directorate B II 는 수의법률·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나. 향후전망 및 평가

EU에서 동물보호단체의 민간운동 차원에서 시작된 동물복지논의가 구체적 공식적인 정책으로 법제화되고 최근 추가적 법제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평소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북유럽 국가의 노력과 함께, 광우병, 구제역 등 식품안전성과 연관된 일련의 파동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관심이 제고된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EU는 구주의회를 중심으로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이 계속 논의되면서, EU과학위원회의 과학적 검토를 거쳐, 큰 무리 없이 시행 가능한 시책을 개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동물에 대한 가혹행위와 관련해서는 스페인의 투우와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의 foie gras (거위간) 생산이 최대 문제가 될 것을 보이나, 현재는 적용을 피해나가고 있다.

국제 농업무역에 있어 유럽은 WTO등 국제규범에 동물복지 관련 규정을 정하는 노력을 해나가는 한편, EU에 수입되는 축산물 및 관련제품(의약품, 화장품 등)의 생산과정도 EU 법령의 준수를 요청할 것인 바, 이는 제 3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III. 맺음말

역사적으로 동물의 복지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62년 미국 Rachel Carson이 "Silent Spring"에서 그리고 몇 년후에 영국 Ruth Harrison이 "Animal Machines"라는 저서에서 현대의 농장사육 가축의 밀집사육으로 인한 비참한 사육실태를 묘사하고 이것이 널리 읽혀져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부터다. 그리고 과거 동물복지는 생산성에 있어 커다란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간 많은 연구결과 동물복지와 생산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

또한 현대의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구입하는 축산물이 어떠한 상태에서 사육된 동물에서 유래되었는지를 알고 싶어하며, 특히 동물복지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된 동물에서 유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미국, EU,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가에서는 축산식품 정책에 있어 동물복지문제를 통합하여 고려하고 있다. 나아가 EU는 회원국들이 동물복지문제에 있어 EU 법률에 맞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EU 집행위원회 소비자보호총국내 독립조직인 식품수의국(Food and Veterinary Office)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고 있다.

EU에서 2000.6 '동물복지와 농업무역(animal welfare and trade in agriculture)'이란 제하의 별도 협상제안서를 WTO에 제출한 것은 앞으로 EU가 동물복지를 고려한 상황에서 생산되지 않은 축산물에 국제무역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동물복지가 축산물 국제무역에 있어 또 하나의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는 EU를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이미 동물복지에 관한 법적규정을 제정하였거나 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볼 때 이는 국제적인 대세로 받아들여져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동물복지의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도 복지가 되지 않는 마당에, 얼토당토않게 호사스럽게 동물에 웬 복지"하고 냉소적 시각으로 넘기고 있지만, 국제적인 상황이나 소비자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볼 때는 머지 않은 장래에 동물복지 문제는 우리 축산업계 전반에 있어 커다란 현실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는 동물의 사육, 수송, 도축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인도주의적 접근법에 따른 일정한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국내 판매 또는 국제무역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야기할 수도 있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관련되는 분야는 양축농가, 가축 수송업자, 도축업계 등 다양하나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집단은 수의사이다. 이는 수의사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동물복지 5대 기본방향에 가장 접근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수의업무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를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적 소득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수의사들은 동물복지에 대하여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자료 >

동물복지관련 EU 법령 목록

□ 일반사항

Treaty of Amsterdam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the Treaties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certain related acts - Protocol annexed to the Treaty on the European Community - Protocol on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Official Journal C 340, 10/11/1997 p.0110

□ 농장에서의 동물보호

모든 동물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kept for farming purposes Official Journal L 323, 17/11/1978 p.0014-0022

78/923/EEC: Council Decision of 19 June 1978 concerning the conclus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kept for farming purposes Official Journal L 323, 17/11/1978 p.0012-0013

Council Directive 98/58/EC of 20 July 1998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animals kept for farming purposes Official Journal L 221, 08/08/1998 p.0023-0027

2000/50/EC: Commission Decision of 17 December 1999 concerning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the inspection of holdings on which animals kept for farming purposes(notified under document number C(1999) 4534) (Text with EEA relevance) Official Journal L 019, 25/01/2000 p.0051-0053

송아지

Council Directive 91/629/EEC of 19 November 1991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calves Official Journal L 340, 11/12/1991, p.0028-0032

Council Directive 97/2/EEC of 20 January 1997 amending Directive 91/629/EEC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calves Official Journal L 025, 28/01/1997, p.0024-0025

97/182/EC: Commission Decision of 24 February 1997 amending the Annex to Directive 91/629/EEC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calves (Text with EEA relevance) Official Journal L 076, 24/02/1997, p.0030-0031

돼지

Council Directive 91/630/EEC of 19 November 1991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pigs Official Journal L 340, 11/12/1991, p.0033-0038

Council Directive 2001/88/EC of 23 October 2001 amending Directive 91/630/EEC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pigs Official Journal L 316, 01/12/2001, p.0001-0004

Commission Directive 2001/93/EC of 9 November 2001 amending Directive 91/630/EEC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pigs Official Journal L 316, 01/12/2001, p.0036-0038

산란계

Council Directive 88/166/EEC of 7 March 1988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laying hens kept in battery cages Official Journal L 074, 19/03/1988, p.0083-0087

Council Directive 1999/74/EC of 19 July 1999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laying hens Official Journal L 203, 03/08/1999, p.0053-0057

Commission Directive 2002/4/EC of 30 January 2002 on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s keeping laying hens, covered by Council Directive 1999/74/EC Official Journal L 30, 31/01/2002 p.0044-0046

□ 도살 · 처리시 동물보호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for slaughter Official Journal L 137, 02/06/1978 p.0027-0038

88/306/EEC: Council Decision of 16 May 1998 on the conclus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for Slaughter Official Journal L 137, 02/06/1998 p.0025-0026

Council Directive 93/119/EC of 22 December 1993 on the protection of animals at the time of slaughter or killing Official Journal L 340, 31/12/1993 p.0021-0034

□ 수송시 동물보호

Council Directive 91/628/EEC of 19 November 1991 on the protection of animals during transport and amending Directive 90/425/EEC and 91/496/EEC Official Journal L 340, 11/12/1991, p.0017-0027

Council Directive 95/29/EC of 29 June 1995 amending Directive 91/628/EEC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animals during transport Official Journal L 148, 30/06/1995, p.0052-0063

Council Regulation (EC) No 1255/97 of 25 June 1997 concerning Community criteria for staging points and amending the route plan referred to in the Annex to Directive 91/628/EEC Official Journal L 174, 02/07/1997, p.0001-0006

Council Regulation (EC) No 411/98 of 16 February 1998 on additional protection standards applicable to road vehicles used for the carriage of livestock on journeys exceeding eight hours Official Journal L 052, 21/07/1997, p.0008-0011

Council Regulation (EC) No 615/98 of 16 March 1998 laying down specific detailed rules of application for the export refund arrangements as regards the welfare of live bovine animals during transport Official Journal L 082, 19/03/1998, p.0019-0022

2001/298/EEC: Commission Decision of 30 March 2001 amending the Annexes to Council Directive 64/432/EEC, 90/426/EEC, 91/68/EEC and 92/65/EEC and to Commission Decision 94/273/EC as regards the protection of animals during transport (Text with EEA relevance) Official Journal L 102, 12/04/2001 p.0063-0068

□ 실험 및 과학 목적으로 이용되는 동물의 보호

Council Directive 86/609/EEC of 24 November 1986 on the approxim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animals used for experimental and other scientific purposes Official Journal L 358, 18/12/1986, p.0001-0028